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1. 10. 5
내 무 위 원 회

1. 심사결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1년 9월 16일
- 회부일자 : 1991년 9월 17일

다. 상정일자 : 제71회 임시회

- 제3차 내무위원회 (1991. 10. 4)
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곽소열)

가. 제안사유

- 현행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에 읍면동장의 직종이 별정직으로 되어있고
- 증평출장소 증천, 장평, 도안 3개지소의 업무기능도 시의동, 군의 읍면 기능과 동일하나
- '90. 12. 31증평출장소 설치시 3개지소중 증천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장평과 도안지소장은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내무부에서 승인되어 증평출장소설치조례로 이에맞게 제정공포되었으나
- 지난 9. 6 증평출장소 기능보강을 위한 내무부장관의 정원승인시 증천지소장의 직종이 타지소장 읍면동장과 같이 "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"으로 조정승인됨에 따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 지소장의 직종을 동일하게조정

| 현 | 행 | 개 | 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• 증천지소장 - 지방행정사무관 | | | |
| • 장평, 도안지소장 -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| | 지소장 - 5급상당 | 별정직지방공무원 |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(전문위원 민귀식)

- 지난 1991년 9월 6일 출장소의 기능보강에 따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 제5조 제3항중 증천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장평·도안지소장은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각각 달리규정되어 있는 직종을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통일조정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의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나. 신구조문 대비표